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70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피고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훈

변론 종결2019. 11. 26.

판결 선고2019.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전 1139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80, 15 내지 27, 94 내지 8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403m² 및 95, 28 내지 30, 99 내지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ㄷ' 부분 41m² 지상의 수문 또는 용수로시설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포항시 북구 B 전 1139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인접 저수지('C저수지'. D 유)의 관리상 필요한 수문과 수로시설을 설치하여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점유하며 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지상의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③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이 사건(쟁점)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27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밝히는 취지로,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농소원확충시설사업상 소류지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시설의 설치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1943년 이전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이어져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그 시효기간 완성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므로 이에 대한 소유자의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는 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점유개시 시점부터 소유자 측으로부터 보상금 또는 사용료 지급 요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문 또는 수로 용도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형상이나 면적(이 사건 토지 전체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토지와 나란히 위치한 인근 저수지 및 그와 이어진 별도의 하천(수로)부지(E 천)의 형상(갑 제8호증, 앞서 본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위 저수지 또는 하천(수로)부지의 사용·관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잠식·침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저수지와 이어진 하천부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국현

별지